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5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발 의 자: 이성배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원중,
김재진, 김춘곤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박상혁,
박 석, 박춘선, 서상열,
신복자, 윤기섭, 이병윤,
이봉준, 이상욱, 이숙자,
이희원, 최민규, 최진혁,
홍국표, 황유정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청소년의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며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.
- 이에 학교에서 약물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전문가를 통한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여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자 함.
- 특히 미국의 청소년마약퇴치위원회(COYAD)와 같이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·체계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,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의 장이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제5항 신설)
- 나.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내 동아리,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동아리,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예방교육의 실시 등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예방교육의 실시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· 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9조(홍보 등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홍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 <u>③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· 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 여 학교 내 동아리, 학생회 활동 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관련부서 문의결과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7조제5항, 안 제9조제3항)

[참고] 2024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서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명	2024년 예산내역	
		347,150
보건교육및연수운영	○ 학교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운영 협의체구성·운영	1,160
	○ 학교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교육 자원인력풀구성·운영	150,000
	○ 학교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	50,000
	○ 학교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교육 연수지원	30,330
	○ 체험중심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	50,330
	○ 마약류예방캠페인 및 문화조성	65,330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추계분석관 이홍래
☎ 02-2180-7952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